

9. 개인정보보호규정 (2012.7.1.신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꽃동네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교내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21.6.22.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 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② “처리”라 함은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 ④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⑤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⑥ “보유부서”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부서, 부속기관 및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⑦ “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개인 정보보호의 원칙) ① 보유부서 및 보유기관(이하 보유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보유부서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보유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④ 보유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 2 장 개인정보보호 조직

제4조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본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 부서별 개인정보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본교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관리 운영하며 개인정보의 관리 감독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기획관리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2019.4.24. 개정)

③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 시행
2. 개인정보처리실태 점검, 감독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4. 본교 행정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5. 기타 개인정보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 ①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을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운영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부서는 전산과로 한다.

제7조 (부서별 개인정보 책임자) ① 부서별 개인정보 책임자(이하 “책임자”이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 행정부서와 연구소 또는 학부, 학과에 서개인정보파일 관리를 담당한다.

② 책임자는 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 단, 부서장의 장기 출장이나 부서장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선임자가 책임자 업무를 행한다.

③ 책임자는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설정 등 제반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 감독을 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 감독을 한다.
4.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내용을 대장으로 관리한다.
5.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이 정한 사항

제8조(개인정보보호심의 위원회) ①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처리정보의 이용과 제한에 대한 사항
4.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본교의 교직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관리처장, 총무처(과)장, 전산과장이 된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2019.4.24. 개정)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 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9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① 본교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2. 부서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제10조 (개인정보파일 대장의 작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항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기재사항(이하 “개인정보 파일대장”이라 한다)을 구

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②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③ 보유부서의 명칭

④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⑤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나 부서의 명칭

⑥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⑦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등) 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보유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부서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부서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보유부서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보유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본교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 보유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는 제공기관의 동의 없이 해당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등

제14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을 보유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해당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리정보의 열람 제한) 보유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해당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다른 법률이나 본교 규정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④ 기타 열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16조 (처리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부서(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해당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침해신고)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의 청구, 그리고 침해신고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교원 : 교무입학처 (2019.4.24. 개정)

② 학생 : 학생지원처 (2019.4.24. 개정)

③ 직원, 외부인 : 기획관리처 (2019.4.24. 개정)

제 5 장 보 칙

제18조 (수수료 등)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하는 자는 열람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본교의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각종 통계자료 수집 목적인 개인정보와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